



촉탁직 직원 운영 규정

규정번호	2-3-5
제정일자	2017.05.10
개정일자	2024.03.20
책임부서/팀·계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촉탁직 직원의 신규임용, 재계약, 보수(연봉)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촉탁직 직원의 보수는 관계법령 또는 다음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 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촉탁직(전문경력계약직 포함)”이라 함은 대학에서 정년까지 근무 후 퇴임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근무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경력을 조건으로 채용되어 대학과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봉, 근로조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. <2024. 3. 20. 개정>

2. “촉탁직 연봉”이라 함은 기본급과 근속, 가족, 급식비, 명절 및 효도수당, 연구 보조비, 학사지도비의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제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 임금을 말한다. <2024. 3. 20. 개정>

제4조(채용의 원칙) ① 촉탁직 직원의 채용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채용한다.

② 전형방법은 서류전형, 면접, 실무능력평가 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임용계약의 체결) ① 신규 임용되는 촉탁직 직원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임용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최초 계약기간
2. 연봉액 및 월 수령액
3. 최초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않는 경우 당연 퇴직
4. 근무조건
5. 기타 계약조건

제6조(계약기간 및 재계약) ① 신규 임용되는 촉탁직 직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② 최초계약기간 만료 후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근무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촉탁직 직원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. 다만, 연봉은 매년 재 책정 할 수 있고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게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인사발령 조치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.

제7조(연봉) ① 최초 계약기간의 연봉은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 이 경우 연봉의 결정은 기존 정년퇴임 이전과 달리 정할 수 있다. <2024. 3. 20. 개정>

②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의 연봉은 개별평가 및 개별협의를 통하여 매년 재 책정하며, 총장이 결정한다. <2024. 3. 20. 개정>

③ 보수는 연봉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

제8조(그 밖의 근로조건) ① 촉탁직원의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.

②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할 때에는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부터 새로이 가산한다.

제9조(평가방법) 촉탁직 직원의 평가시기 및 방법은 「직원인사평정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10조(신분보장) 촉탁직 직원은 계약기간 중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기구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.

제11조(준용규정) 촉탁직 직원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촉탁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촉탁직 직원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